

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4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4. 13

제출자 : 파주시장

☐ 제안이유

상수도관리사업소 기구가 상수도사업소로 승격되고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간사를 변경하고자 함.

☐ 주요골자

- 위원회는 안건작성, 회의록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수질시험담당으로 한다(안 제8조)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당 초	번 경
제8조(간사등) ①위원회는 안건작성, 회의록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인 둔다 ②간사는 상하수도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상수도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	제8조(간사) 위원회는 안건작성, 회의록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수질시험담당으로 한다.